

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

의 번 안 호	41
------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.

제출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정이유

○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

2. 주요골자

○ 시설기준 (안 제4조)

- 대지 1,000㎡ 이상 (계절시장: 300㎡ 이상)
- 급수 · 배수 · 위생시설 (계절시장은 제외)

○ 계절시장 개설자의 자격 (안 제5조)

-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
-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
-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시장개설자의 책무 (안 제7조)

-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
-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
-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
-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
-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
-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제2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·관리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·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정기시장"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제4조(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) ① 정기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한다. 다만,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(이하 "계절시장"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지가 1,000제곱미터이상. 다만,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이상
2. 급수시설·배수시설·위생시설(화장실·오물처리장)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계절시장의 개설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공유지인 경우 사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.
3. 도로부지의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.

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계절시장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)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 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
2.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
3.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시장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
2. 제4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
3. 계절시장 개설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
4.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

제6조(정기시장의 운영·관리등) ① 구청장이 개설한 정기시장(계절시장은 제외한다).

이하 본조에서 같다.)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때
2. 질병 또는 기타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④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장개설자의 책무) ①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
2.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
3.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

4.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자도
 5.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
 6.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
- ②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비등의 징수) ① 구청장은 정기시장의 관리인·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등 시장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·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② 관리비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정기시장 개설대장의 비치) 구청장은 "별지 제1호 서식"의 정기시장 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 제1호 서식 >

정기시장개설대장